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993

발의연월일: 2022. 12. 19.

발 의 자:이헌승·강민국·김미애

김선교 • 박성민 • 백종헌

서병수 · 성일종 · 이주환

전봉민 · 정동만 · 최영희

홍석준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병무청훈령인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이 제정되어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.

그런데 병역명문가의 지원 및 혜택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도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고 일부 민간시설에서는 동 제도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등 병역명문가 관련 사업이 시작된 지 18년이 지난 현재도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

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 신설).

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장에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2조의3(병역명문가 선정) ① 병무청장은 3대(조부부터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가족의 모든 남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. 다만, 3대의 가족 중 남성이 없고 직계비속 여성이 「군인사법」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를 포함하여 선정한다.

- 1.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(전투·의무·해양경찰, 경비교도대원, 의무소방원,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)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
- 2.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되거나 6·25 전쟁에 참전하여 군인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병검사·입영 기피, 병역 면탈 사실이 있 거나 「군인사법」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없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·절차·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2조의4(병역명문가 예우) ① 병무청장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  -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 가로 선정된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-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·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등의 면제·할인 또는 각종 우대혜택 제공에 필요한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	안
해양경찰, 경비고 소방원, 상근예비 다) 복무를 마 준사관 및 부사 무기간을 마친 중인 사람 2. 1948년 8월 15	조부와 그 손속을 말한다. 같다)의 모든 호의 어느 하 경우 병역명문 있다. 다만, 3 성이 없고 직 「군인사법」 의무복무기간 포함하여 선정 인사관, 병으로 (전투・의무・ 의무부, 의무・ 의역을 포함한 ·쳤거나 장교, 관 중 의무복 후 계속 복무

<신 설>

나 6·25전쟁에 참전하여 군 인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병검 사·입영 기피, 병역 면탈 사실 이 있거나 「군인사법」 제37 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 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없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·절차·기준 및 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82조의4(병역명문가 예우) ① 병무청장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우 수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 다.
  -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 장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-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

장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 에게 해당 기관·단체에서 운 영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등 의 면제·할인 또는 각종 우대 혜택 제공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④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
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